

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현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1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31.

발의자 : 김현아 · 주호영 · 김석기

경대수 · 문진국 · 송기석

박성중 · 추혜선 · 박인숙

이종구 · 박재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,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. 특히 1970년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오일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.

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건설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,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. 또한, 청년층의 건설업 회피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노령화되고 있으며, 향후 건설기술인들의 감모(減耗) 및 이탈 등으로 고급 건설기술인력이 태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건설기술자가 존중 ·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,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.

아울러 ‘건설기술자’를 ‘건설기술인’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(안 제20조의2 신설).
- 나.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·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, 발주자·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,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·공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1호 신설).
- 다. 현행법 제2조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8조, 제31조, 제39조, 제40조, 제48조, 제51조, 제53조, 제55조, 제62조, 제69조, 제81조, 제84조, 제89조 및 제91조 등에 규정된 ‘건설기술자’를 ‘건설기술인’으로 용어를 순화함.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“건설기술자”란”을 ““건설기술인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, “건설기술자에게”를 “건설기술인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건설기술자를”을 “건설기술인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건설기술인의 날) ①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의 궁지와 자부심을 복돋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한다.

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포상, 행사예산지원 등 건설기술인의 궁지와 자부심을 복돋우기

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건설기술자로”를 “건설기술인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설기술자의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의”로,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건설기술자의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의”로, “건설기술자로”를 “건설기술인으로”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)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· 시방서(示方書)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·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현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제23조의 제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, “건설기술자에게”를 “건설기술인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, “건설기술자에”를 “건설기술인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4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제5호마목 중 “건설기술자로서”를 “건설기술인으로서”로, “건설기술자가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이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건설기술자로”를 “건설기술인으로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중 “건설기술자를”을 “건설기술인을”로 한다.

제3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기술자로”를 “건설기술인으로”로 한다.

제40조제5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, “책임건설기술자를”

을 “책임건설기술인을”로 한다.

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전단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우수건설기술자를”을 각각 “우수건설기술인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우수건설기술자가”를 “우수건설기술인이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4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2항 후단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2항 후단 중 “건설기술자는”을 “건설기술인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1항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, “건설기술자단체”를 “건설기술인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설기술자단체”를 “건설기술인단체”로 한다.

제81조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3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2호 중 “건설기술자가”를 “건설기술인이”로 한다.

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1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전단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각각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 <u>건설기술자</u> ”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,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	8. “ <u>건설기술인</u> ”이란----- .
9. · 10. (생 략)	9. · 10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)	제18조(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	① ----- 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1조에 따른 <u>건설기술자</u> 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	3. ----- <u>건설기술인</u> ----- .

<p>4. ~ 8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제3장 <u>건설기술자</u>의 육성 등 제20조(<u>건설기술자</u>의 육성)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<u>건설기술자</u>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건 설기술자</u>의 육성과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 할 수 있다.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건설 기술자</u>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 는 교육 · 훈련을 받아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교육 ·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 는 사용자는 <u>건설기술자가</u> 제2 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야 하며, 이를 이유로 그 <u>건설 기술자에게</u>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<u>건설기술 자를</u>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</p>	<p>4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3장 <u>건설기술인</u>의 육성 등 제20조(<u>건설기술인</u>의 육성) ① -- -----<u>건설기술인</u>----- ----- -----<u>건 설기술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<u>건설 기술인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<u>건설기술인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건설기 술인에게</u>----- ----- -----. ④ -----<u>건설기술 인을</u>-----</p>
---	---

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<신 설>

### 제20조의2(건설기술인의 날) ①

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  
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의  
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  
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  
술인의 날로 한다.

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포상, 행사예산지원 등 건설기술인의 궁지와 자


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 
학교, 발주청, 신고한 건설기술  
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 
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 
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
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  
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 
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, 허가, 등록,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,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·관리, 건설기술자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건설기술자의 국가 간 상호 인정)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자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요

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(相互) 건설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.

### 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건설  
기술인으로 -----.

## 제22조의2(건설기술인의 업무수

행 등)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·시방서(示方書)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권리·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제23조(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)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24조(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

제23조(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금지 등) ① 건설기술인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) ① ----- 건설기술인이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 
----- 건설기술인-----  
-----

<p>우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 발주청은 <u>건설기술자가</u>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<u>건설기술자에게</u>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(이하 “인·허가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<u>건설기술자가</u>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<u>건설기술자에</u>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<u>건설기술자는</u> 지체 없</p>	<p>--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건설기술인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에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건설기술인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건설기술</u> -----<u>인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<u>건설기술인은</u>-----</p>
---	---

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(5) (생략)	(5)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)	제25조(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건설기술자</u> 에 대한 전문교육	4. <u>건설기술인</u> ---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)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<u>건설기술자는</u>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제28조(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) ①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은</u>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취소 등) ① (생략)	제31조(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② -----

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5. ----- ----- ----- --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<u>건설기술자로서</u>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<u>건설기술자가</u>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( <u>건설기술자가</u>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)	<u>건설기술인으로서</u> ----- <u>건설기술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바.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<u>건설기술자로</u>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	바.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으로</u> ----- -----
사.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<u>건설기술자를</u>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	사. ----- <u>건설기술인을</u> ----- ----- ---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
<p>③ ~ ⑤ (생 략) 제39조(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)</p> <p>① ~ ④ (생 략)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건설기술자로</u>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.</p> <p>1. ~ 5. (생 략) ⑥ (생 략) 제40조(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<u>건설기술자</u>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<u>책임건설기술자를</u>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·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 략) 제48조(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</p>	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9조(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으로</u>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제40조(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<u>건설기술인</u>----- -----<u>책임건설기술인을</u>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 제48조(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/p>
---	--



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 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,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 건설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,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### 1. ~ 3. (생 략)

### 제53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)

①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 
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
투자법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
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  
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.  
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인·  
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  
설기술용역, 건축설계, 「건축  
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 
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  
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 
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

----- 우수  
건설기술인을 -----.

③ \_\_\_\_\_

## 우수건설기술

### 1. ~ 3. (현행과 같음)

#### 제53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)

① \_\_\_\_\_





<p><u>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</u> (이하 이 장에서 “협회”라 한다)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</p>	<p><u>체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(생 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1조(비밀의 누설 등 금지)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<u>건설기술자의</u>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(盜用)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81조(비밀의 누설 등 금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4조(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제84조(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 략) 3.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<u>건설기술자</u>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</u></p>
<p>4. (생 략)</p> <p>제89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9조(별칙) ----- ----- -----</p>

<p>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·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<u>건설기술자가</u> 된 자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제9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. ~ 4. (생 략)</u>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 지 아니한 <u>건설기술자</u></p> <p>2.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 담을 이유로 <u>건설기술자</u>에게</p>	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</u>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</u> <u>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</u> <u>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</u> <u>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</u></p> <p><u>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</u> <u>호까지와 같음)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건설기술인</u>-----</p>
--	--

불이익을 준 사용자	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 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 니한 <u>건설기술자</u>	4. ----- ----- --- <u>건설기술인</u>
5. ~ 12. (생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